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37 발의연월일: 2022. 6. 14.

발 의 자:하영제·김승수·김용판

박덕흠 • 박성민 • 서일준

이달곤 • 조경태 • 조명희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 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소음대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를 "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
	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u><신 설></u>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
	책지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
	용을 해당 소음대책구역에 거
	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
	<u> 여야 한다.</u>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
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	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
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u>특</u>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u>시장</u>

<u>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u>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u>이라 한다)</u> 은 공항소음피해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
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
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 군수 · 구청장</u>
② ~ ④ (현행과 같음)